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 2014년도 업무계획

---

2013. 12. 23.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목 차〉

I. 총론 .....	1
1. 2013년 업무총평 .....	1
2. 대내외 환경 및 여건 .....	3
II. 2014년도 업무계획의 기본방향 및 총괄도 .....	8
1. 기본방향 .....	8
2. 2014년 업무계획 총괄도 .....	9
III. 2014년도 세부목표별 업무계획 .....	10
1.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 강화 .....	10
2.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	19
3.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	28
4.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	42
5. 차별시정 강화 .....	55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63
<기획사업>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	66
<기획사업> 정보인권 증진 .....	68
<일반사업> 인권위 역량강화 .....	70

# I. 총론

## 1. 2013년 업무 총평

- 2013년에 새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에서 수행할 12대 인권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인권증진3개년계획(2012~2014년)에 따라 5대 전략목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정보인권 보고서, 장애인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보고서 등 특정분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새로운 분야의 인권 이슈를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함.
-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인권 이슈들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인권정책기획단을 운영함.
  - 사내하청·도급·파견 등 간접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제고 및 사회안전망 제공방안을 논의함.
- 전년도 노인인권정책 기획단 운영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건강권, 노동권, 주거권, 노인 학대 등 노인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권고함.
-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권준중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함.
  - 영화진흥위원회, 대구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예정), 우즈베키스탄 인권센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과 MOU 체결.
-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국제학술대회(1월), 북한인권개선 국제

심포지엄(4월),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9월) 개최, ODA, APF 초청 연수 등을 통하여 국제인권사회에서 인권위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다만, ODA연수프로그램은 KOICA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수행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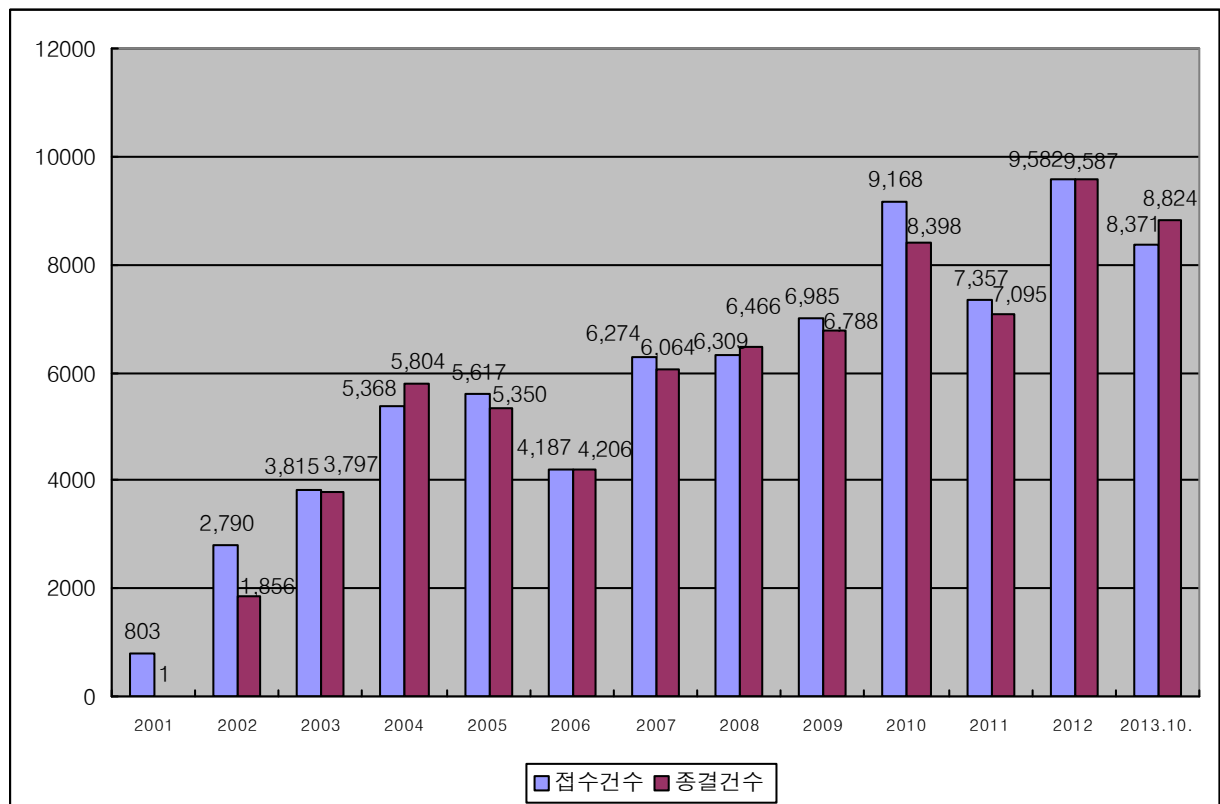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참 가 국	1개	4개	10개	7개	8개	30개국
참가인원	16명	20명	15명	14명	16명	81명

-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4월), 지방의원 인권리더십 아카데미(7월), 인권제도 방향모색 워크숍(10월) 등을 통해 인권조례 확산의 계기로 삼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인권위, 인권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위원회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언론의 지원, 정부 관계부처의 협조로 2014년도에 대전인권사무소가 신설되기로 확정됨.
  - 다만, 강원지역 등 인권사무소의 추가 설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지역주민을 위한 인권체험관을 확대·운영하여 부산·광주인권사무소의 인권테마역사 외에 추가로 대구지역에 폐교를 활용한 인권체험관을 개소하였고(7월), 서울은 시청역사(2호선) 안에 세계인권선언을 주제로 한 디자인을 설치함.
  - 향후 인권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인권체험관 설치 등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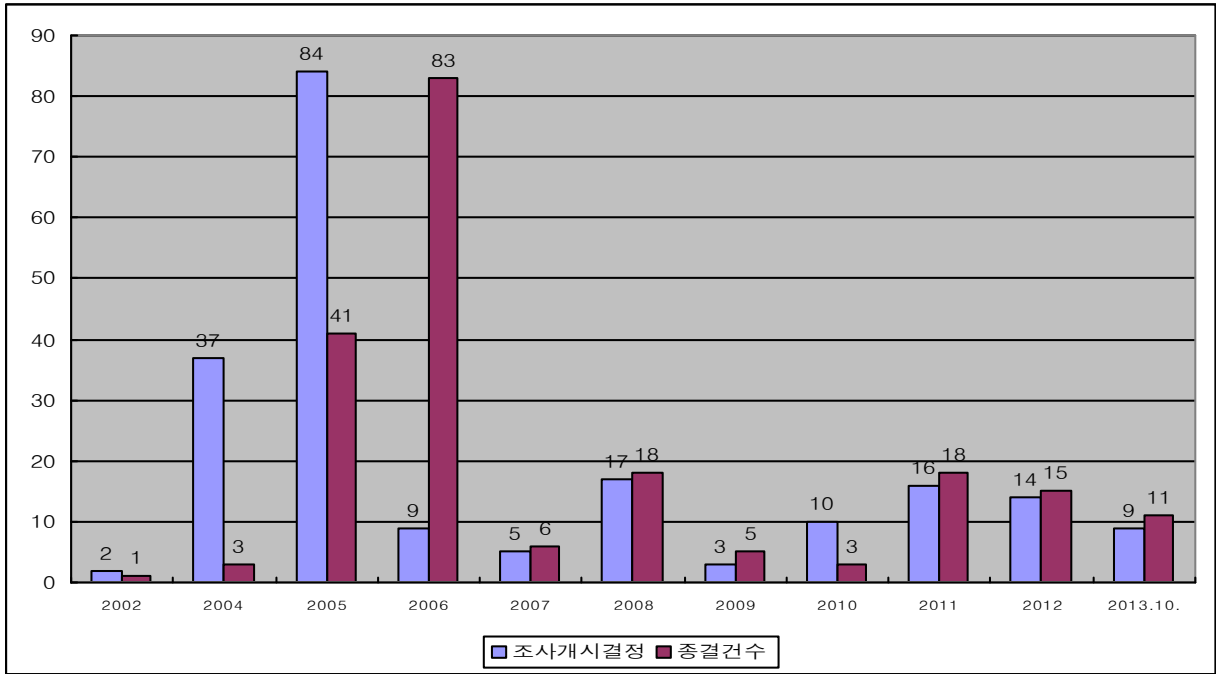
## 2. 대내·외 환경 및 여건

### 가. 대내적 여건

- 2014년은 인권증진3개년계획(2012년~2014년)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차기 중기계획의 주요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해야 함.
- 한정된 조직과 인력으로 급증하는 인권상담 및 진정, 인권교육 등에 대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진정 및 직권조사 추이
  - 진정 접수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진정사건의 처리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진정사건 접수 증가 추이로 볼 때 조만간 연 1만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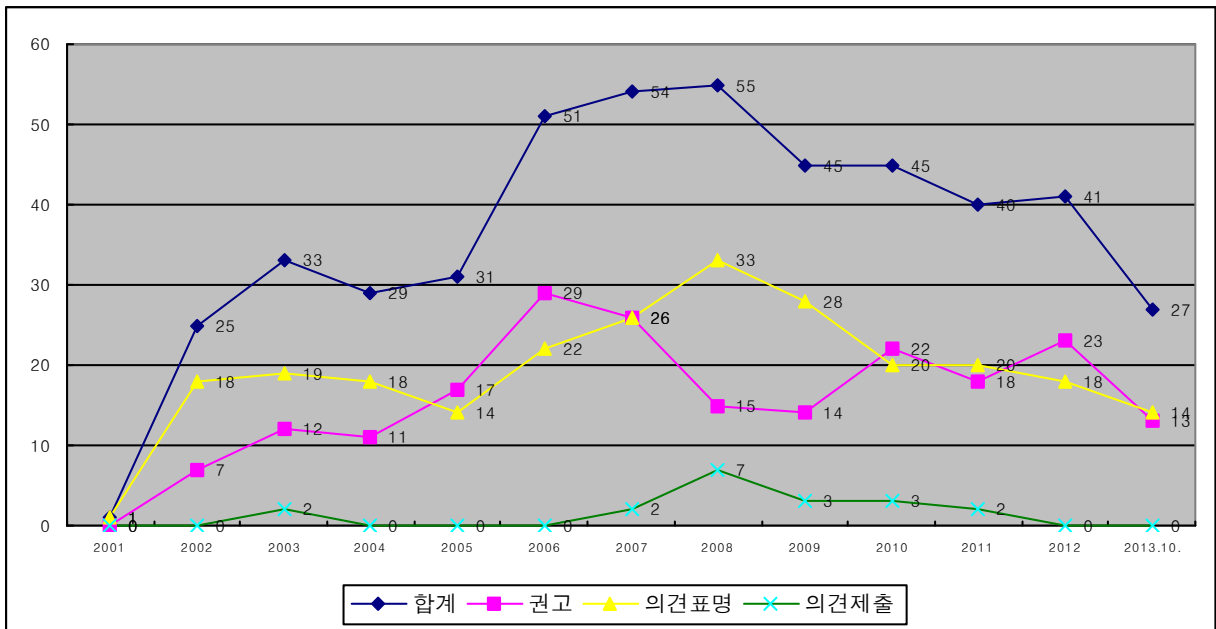


○ 우리 사회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등 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 2003년 0건, 2005년도 조사개시 및 2006년도 종결은 나이차별사건에 대한 집단 직권조사임

□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의견제출은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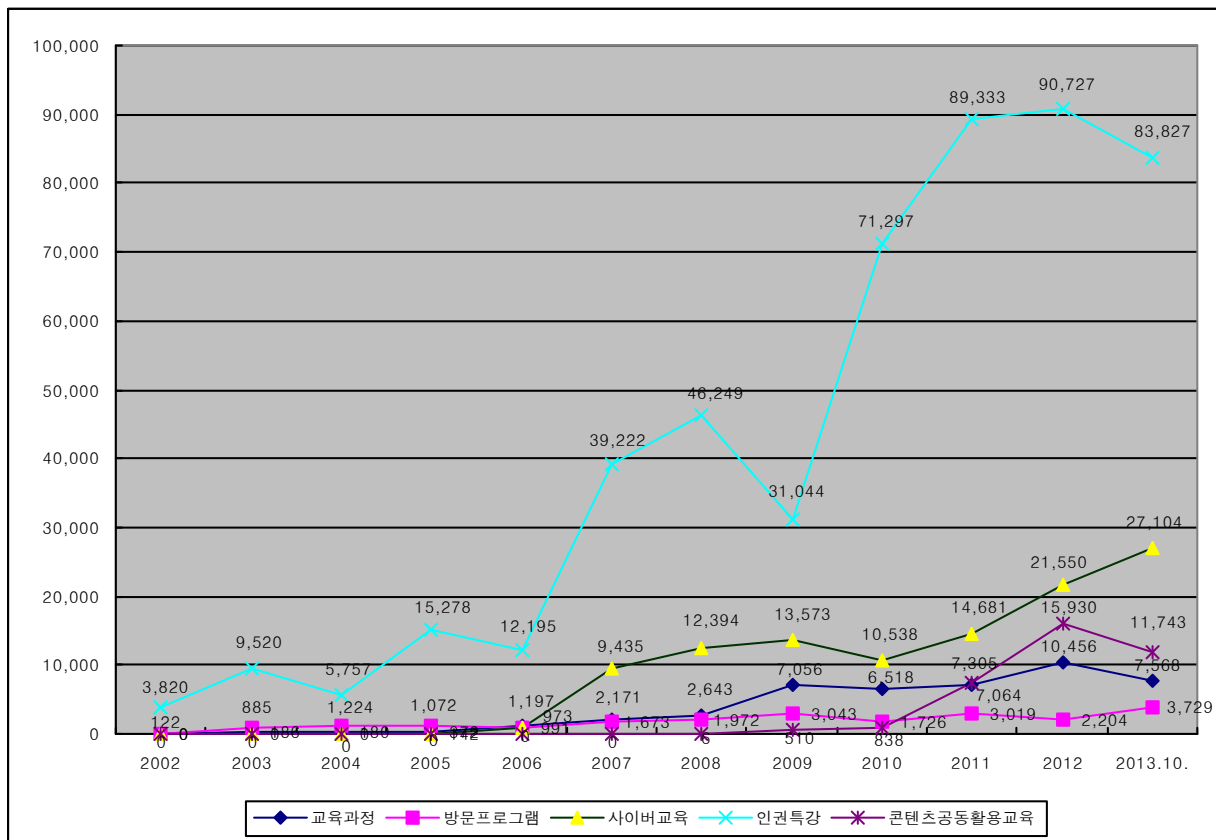
※ 2013년의 정책권고는 40건 정도 예상됨

□ 인권교육 수요의 증대

○ 학교폭력 증가, 장애아동 및 시설수용자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끊이지 않는 언론보도, 인권조례 제정, 인권교육 의무를 규정한 각종 법률과 조례 제정 등의 이유로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 또한 기업의 인권경영, 스포츠 분야의 인권상황 개선, 정보인권 분야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영역에 대한 인권의제 확산 및 관계자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인권교육 영역이 크게 확대됨.

○ 이러한 인권교육 수요 증대에 비해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인권교육과정 운영 및 다수의 시설종사자 의무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내부 역량강화 및 인권교육 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나. 대외적 환경

- 2014년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본격적 추진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 지역사회의 인권 제도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대거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법무부는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인권정책기본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국회에서 논의되는 「인권기본법」과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 위원회와 법무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19대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독립성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인권기본법」 및 「차별금지법」, 「인권교육법」, 「북한인권법」 등 법률 제정, 「성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입법차원의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는 인권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함과 동시에 정부로부터의 독립적 지위 강화에 관심을 가질 전망이다.
  - 2013년 5월에 발효된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공감대 확산 노력을 비롯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 권고사항 및 주요 인권조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14년 4월에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2011년)된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 국제인권기준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심의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 2014년 3월에 우리 위원회에 대한 ICC 승인소위원회 정기심사 예정.



- 2014년 3월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 방문 결과를 보고할 예정임. 위원회 관련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독립적 지위 보장, 인권옹호자의 의견청취 등 긴밀한 협력,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임.
  
-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함에 따라 국민을 상대로 한 선의의 경쟁 속에서 우리 위원회의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안정행정부(마을변호사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수요에 맞는 상담제도 확산과 노인·청소년·이주민 등 상담대상별 전문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지방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의 학칙 개정 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인권제도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됨.(2013. 11. 현재, 광역 12곳, 기초자치단체 39곳에서 인권조례 제정)
  -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법 시행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문제 등 인권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국제적 요구 강화
  - 유엔은 국가의 인권교육 실행 책임성과 국가수준의 조치사항 등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 준거틀을 제시하였고,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 2014)을 통해 고등교육 체계, 경찰, 검찰·교정 등 법집행관,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음.
  -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각 정부에 2015년까지 이 행동계획에 의거 이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는바, 인권교육 분야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인권사무소 확대 요구
  - 대전인권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인권상담·진정사건·인권교육 등 지역의 인권수요 증대에 따른 인권사무소 신설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임.

## II. 2014년도 업무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 업무

### 1. 기본 방향

#### 가. 인권증진 3개년 계획의 마무리

- 제3기 인권증진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별 사업 및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함.
- 제3기 인권증진3개년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제4기 위원회 중기계획에 미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 제시

#### 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 노력


- 제19대 국회에서 「인권기본법」, 「인권교육법」, 「차별금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경제 불황에 취약한 노인, 아동, 빈곤계층, 저임금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 다.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 국제인권흐름에 부합하는 기업에서의 인권경영 확산 노력, 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보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 북한인권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
- 인권교육 의무대상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안정적 수행, 인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공무원, 경찰, 군인 등 법집행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확대, 지역 인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위원회와의 건설적인 발전방향 모색

#### 라. 2013년 국정감사 요구 사항 반영

## 2. 2014년 업무계획 총괄도

<b>비전</b>	<b>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b>
<b>사명</b>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b>5대 전략 목표</b>	<b>성과 목표</b>
I.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유권의 보장·강화</li> <li>2. 사회권의 확대·증진</li> <li>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li> <li>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li> <li>5. 법 제·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li> <li>6. 인권지수 개발</li> </ol>
I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사회 이주민인권증진</li> <li>2. 노인인권 향상</li> <li>3. 아동·청소년 인권향상</li> <li>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li> </ol>
III.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조사 확대</li> <li>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li> <li>3.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li> <li>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li> </ol>
IV.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증진문화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li> <li>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li> <li>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li> </ol>
V. 차별시정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차별시정 강화</li> <li>2. 성차별 시정 강화</li> <li>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개선</li> <li>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li> <li>5. 소수자 인권향상</li> </ol>
<특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li> </ol>
<기획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li> <li>2. 정보인권 증진</li> </ol>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권위 역량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 독립성 강화</li> <li>2. 국내외 협력 강화</li> <li>3.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li> </ol>

### Ⅲ. 2014년도 세부목표별 업무계획

#### I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 1. 자유권의 보장·강화

###### I-1-1. 자살 원인의 조사연구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

-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8년째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 또한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언급될 정도로 심각하며 생애 전주기에 걸쳐 자살률이 심각하게 높은 상황
- 생애주기별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며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 범부처간 자살위기에 적극적 대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 검토
- 자살예방에 관한 문헌연구 및 관계기관 정책 모니터링
- 생애주기별 자살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모색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I-1-2.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보장, 유형별 표현의 자유 및 기본적 자유권의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등이 충돌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
- 특정노조에 대한 정부의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한 시정권고, 담당 재판부에 대한 의견제출 등 시의성 있는 대응
-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대표적인 자유권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등 대응

### I-1-3. 생명권 및 생명윤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판단기준 마련

○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생식술, 연명의료의 제도화, 유전자 정보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생명권 및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하고 생명권을 보호

- 생명윤리 쟁점 이해 및 쟁점별 관련 법·제도 판단기준 분석
- 생명윤리 세부 쟁점 중 보조생식술, 연명의료, 유전자 정보 등에 관한 법·제도적 판단기준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I-1-4.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모색  
-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의 피의자·피고인 및 참고인의 인권보호

○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보장 강화

- 범죄피의자 조사시 아동, 정신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실효성 제고 모색
- 폭력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 등

### I-1-5. 영장제도의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권고

○ 적법절차원칙의 강화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검찰과 법원의 영장제도와 관련하여 체포와 구속사유에 대한 영장의 심사 강화, 긴급 체포 후 사후영장배제 개선, 긴급 압수·수색 요건 및 집행방법의 불확실성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 따라서 2013년에 실시한 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기초하여 영장제도를 인신구속제도와 대물적 강제처분 제도로 양분하여 영장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

- 체포전치주의와 즉시적 법관대면권 인정, 긴급체포 후 사후 체포영장청

구 의무화, 준현행범인 인정범위 제한, 내사단계에서 인신구속 개선, 영장발부의 판단 근거와 기준의 개선, 영장 심사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 대인적 강제처분 관련 법, 제도, 관행 개선 방안 검토

- 긴급 압수·수색·검증의 대상 및 시간 제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근거와 집행방법 개선 등 대물적 강제처분 관련 법, 제도, 관행 개선 방안 검토
- 영장 관련 내규, 지침, 가이드라인 등 규정 정비
- 수사 담당자의 인식 제고 및 교육훈련 개선 방안 검토

## 2. 사회권의 확대·증진

### I-2-1. 취약계층의 노동권 등 보장

-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취약계층 인권개선, 노동3권 보장 및 취약계층의 노동권 분야의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 ※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11.10.~11.)는 우리 정부에게 사회권 증진 관련 다수의 권고(비정규직 권리보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30개 항)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안전망 등 근로빈곤층의 노동권 개선 방안 검토
- 취약계층 노동권 현안대응

### I-2-2. 사회권 확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보장 정책의 미흡함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사회권 증진에 관한 다수의 권고를 받는 등 사회권 보장·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현안대응이 필요
- 특히,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인하여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의 보장, 건강권의 보장 등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

-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관련 정책개선 방안 검토
- 빈곤계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 건강권 등 증진 검토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권 확대

### I-2-3.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정책과)

○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책개선 권고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빈곤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설문·면접조사
- 관련 국내 법제 연구 및 국제기준·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설문·면접조사

### I-2-4.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대표적 구조요인은 '위험의 하청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직종인 조선업과 건설업 하청업체의 작업상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산재율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산재율 저감방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 산재 다발 조선업체, 건설업체 작업상황에 대한 실사
- 관련 국내 법제 연구 및 국제기준·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 I-3-1. UPR 국내이행 모니터링 및 인권기준의 정착방안 모색

○ 유엔인권이사회의 제2차 UPR 권고사항의 국내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강화 및 국내 인권상황 개선

○ 유엔인권메커니즘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UPR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

- 제2기 UPR 백서 제작 및 배포
  - 제2기 UPR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의 문서를 집대성하여 제작·배포하여 국내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
- 제2기 UPR 권고사항 국내이행계획 간담회 개최

- 2013년 제2기 UPR 한국 심의보고서에 채택된 70개 권고사항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단체·학계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 I-3-2.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모니터링 강화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제49차 회의(2011.7.19.)에서 우리나라의 제7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총 49개항의 최종 견해 채택
- 주기적 이행 점검을 통해 최종견해 권고사항 이행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관계기관의 이행의지를 제고
- 국회의 여성 인권 관련 입법 상황, 법원의 판례, 정부의 여성 인권 정책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협약 이행상황 중간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개인통보 권리구제 절차 안내 및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사례집 발간 배포

### I-3-3.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 제출 및 심의 모니터링

- 우리 정부는 2007년 3월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1년 6월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약감시기구는 국가인권기구에게 각 정부의 조약이행 심사를 위한 보고서 제출, 규약위원과의 면담 및 정보 제공 등의 권한을 부여
- 이에 따라 2014년 4월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사전절차로써 우리나라 정부에 질의할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만들기 위한 검토회의에 2014년 2월까지 우리 위원회의 독립보고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리 정부 국가보고서 관련 쟁점 목록 검토회의 및 심의에 참석하여 국제인권기준의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이 요구(한국 국가보고서 심의는 2014년 10월 예정)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회기전 실무그룹 회의에 쟁점목록 관련 보고서 등 제출
- 국가보고서 쟁점목록 검토회의 참석
- 국가보고서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 I-3-4.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 강화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리 정부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우리 정부의 국가보고서 공유 및 향후 이행점검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제인권기준의 실효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정책의제의 발굴 및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
-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내용 등 공유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점검 및 향후 계획수립

#### I-3-5.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인권정책과)

- 우리나라 개발원조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 개발원조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적 개발협력 정책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HRBA) 방식의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 정부 정책 및 시행 담당자 설문·면접조사
- 개도국 현지조사(2-3개국, 캄보디아와 네팔 등)
- 관련 국내 법제 연구 및 국제기준·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 전문가와 원조 실무 담당자 면담 및 간담회

### 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 I-4-1. 군대 내 권리구제 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소원수리제도는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합리, 부조리한 상황을 익명으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나 비밀보장과 신분보호가 되지 않는 점 등으로 소원수리제도에 대한 병사들의 불신이 제기
  - 권리구제의 청원이 용이하도록 효과적인 경로와 방법을 강구하고 상관이나 군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당하거나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시 관할 징계상관에게 군사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

### 안을 모색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 사후적으로나마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불만과 불복을 내용으로 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
  - 군복무중 예기치 못한 사망과 질병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모색

- 소원수리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실태조사
  - 군대 내 관련 현황과 규정 파악
  -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국내외 사례연구
  - 군 장병 이용실태와 인식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군대내 사망, 질병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연구
  - 사망과 질병에 대한 보상실태와 현황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과 토론회 개최
  - 관련부처 협의와 정책제도 개선 제언

## I-4-2. 군 의료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양질의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2013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개선 방향을 제언하여 군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도모

- 2013년 실시한 “군 의료관리 체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 국방부 등 관계 부처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 군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언

## 5.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 I-5-1. 인권NAP 권고에 따른 모니터링 및 정책협의 강화

- 위원회 권고 이후 정부(법무부) 인권NAP 이행 여부 확인 등 모니터링, 권고이행을 위한 관련 부처와 정책협의 강화

- 인권NAP 이행 모니터링
- 인권NAP 2차년도 이행에 대한 전문가 자문
- 관련 부처와 협의

### I-5-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확산 및 구축

- 2012. 4.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이래 2013. 11. 현재 총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여전히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소수이고 인권조례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들도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에 인권제도가 확산·구축될 수 있도록 조례 미제정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권제도화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거나 인권정책 도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행이 소극적인 지자체의 경우 적극적 이행을 견인할 필요
- 이에 인권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 등을 검토·공유하여 지자체 인권제도화를 확산·구축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 개최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인권사무소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추진 지원을 위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인권포럼’ 운영(부산)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동하여 지자체 인권제도화에 나서는 현안과 이슈에 대한 선도적 논의 확보(광주)
  - 기본인권조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대구)
- 위원회 권고 이행 독려,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및 인권조례 제정 후속조치에 따른 추진현황 모니터링, 실무협의를 등 지원
  - 기초지자체의 인권조례 제·개정 및 인권제도화를 위한 제반 사업 지원

### I-5-3.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
- 위원회 활동 및 범위의 독자적인 역할 확보를 위한 절차와 제도 조성

- 「인권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
- 정부의 의견조회 요청시 「국가인권정책기본법」(안) 검토

## 6. 인권지수 개발

### I-6-1. 국가인권지수 측정 및 대외 공표

-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1차년도 사업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폴 등 기반구축'(2012) 및 2차년도 사업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2013)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인권지수 측정 및 공표

- 국가인권지수 측정 및 해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12년 개발된 지표에 따라 인권지수를 측정하고 지수 결과를 발표하되 측정값의 의미와 원인, 정책방안 모색

#### ※ 국가인권지표 및 지수 연차별 개발 일정

- 1차 년도(2012) 국가인권지수 지표 폴 구축
- 2차 년도(2013) 국가인권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 선정 및 모의 운영
- 3차 년도(2014) 국가인권지수 발표 및 운영

### I-6-2. 국가인권지수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등 개최

- 체감 정도가 높은 인권지수 측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간담회,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가인권지수의 타당도를 높이고 국민적 합의 도출

- 2013년 연구 결과인 인권지표와 지수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의견조회, 정책관계자 협의회, 공청회 등을 개최
- 논의 결과를 인권지수 측정 시 반영

## I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 1. 다문화 사회 이주민 인권 증진

#### II-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행 모니터링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주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정부의 이주민·외국인에 대한 각종 법령·정책·제도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권고이행을 강화
  - 2012년도는 전반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2013년도에는 TV 모니터링 실시, 2014년도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이에 관련한 정책대안을 마련
- 현장·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
  - 이주민권에 관심 있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구성
  - 현장·정책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보고
- ‘이주인권가이드라인’에 의거한 분기별 이주 관련정책·법령·제도, 국민인식, 정규 교육과정 등 실태 파악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발간
- 미이행된 사항, 발굴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추진 및 정책권고 검토

#### II-1-2. 연예홍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 연예홍행비자 소지자(2012년말 기준, 4,528명)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고, 국내 성산업에 유입되는 E-6비자 소지 이주여성이 증가(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 실태조사)하고 있고, 고용주(연예기획사) 및 업주로부터의 착취와 인권침해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한 실정
  - 2008년 51명(비자소지자 4,845명), 2009년 116명(비자소지자 4,577명)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에 한국의 연예홍행비자(E-6) 소지

여성에 대해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성매매 착취에 종속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설립할 것을 권고(2011.7.29.),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에 예술홍행(E-6) 비자제도를 재검토하고,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관련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통제를 행할 것을 권고(2012.9.4.).

- 따라서 연예홍행 소지 이주여성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

- 연예홍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입국 경로 및 국내 배치현황 파악
- 협박 및 강압 등에 의한 유흥업 유입경로 파악
- 동 비자소지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
- 동 비자소지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파악 등

### II-1-3. 인권선진국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벤치마킹

- 결혼이주민의 이혼 증가, 신분증명 없는 이주아동 발생, 안티-다문화 정서 확산 등 부작용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선발경험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권보호에 기반을 둔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
- 캐나다는 오랜 이민·이주 역사와 시행착오를 통해 이주 초기 정착지원 시스템이 정착된 바, 관련 제도 운용실태 파악 및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발굴을 위한 방문조사를 실시

- 캐나다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제도운영 실태 파악
- 정부, 단체 등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관련 업무처리 현황 파악
- 국내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개발 및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등

### II-1-4.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보호 강화(방문조사)

- 2007년도부터 인권친화적 외국인보호시설의 환경개선과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외국인 보호시설의 목적이 사실상 구금·수용이 아닌 일시적인 보호에 걸맞은 시설관리와 유지가 되도록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권고 필요

- 난민 정착시설에 보호 중인 난민의 보호현황 조사
- 여성, 아동 등 특수 피보호자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 보호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난민신청자에 대한 업무처리 및 처우 현황
- 인권 친화적 보호시설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시 등

### II-1-5.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증진

-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과 동등한 교육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촉구한 바 있으며, 2012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난민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
-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비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건강권, 학습권 등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
-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주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

- 신분증명이 없는 이주아동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실태 파악
- 신분증명이 없는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사례 검토
- 미래지향적 이주아동 인권증진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 2. 노인 인권 향상

### II-2-1. 노인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협의

- 제6기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노인인권 개선 종합권고 및 2012년도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정책 모니터링 및 협의를 통해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

- 노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노인인권 상황 모니터링

- 노인인권지킴이단 모집 및 운영
- 위원회 과제를 중심으로 관할지역내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전개
- 지킴이단 교육(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주제) 및 현장답사, 보고서 작성
- “노인인권 정책 종합권고”,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관련 정책개선 권고”에 따른 정부정책 모니터링 및 협의

## II-2-2.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실태 및 노인환자의 인권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노인요양병원의 인권적 운영 가이드라인 및 노인요양병원 환자의 인권 관련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
- 노인요양병원 환자, 직원 및 운영관계자 설문 및 면접조사
  - 관련 국내 법제 연구 및 국제기준·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 3. 아동·청소년 인권향상

### II-3-1. 아동인권 보장 기반 구축 및 아동인권 개선정책 검토

-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돌봄의 제공이 미흡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안들도 상당함.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해 존중 등 권고를 받은 사항의 국내이행방안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
  - 이에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여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권해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방안 검토, 정책 과제 발굴 및 검토
  - 미혼 한부모 가정 아동의 인권 개선을 위한 현안 대응



## 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 II-4-1.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 구금시설에 대한 면전진정은 인력 및 예산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구금시설의 수용자의 진정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편진정 적극 권장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 필요
-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외부 출입이 차단되어 있고 외부 전화통화마저 일부 제한적이어서 진정함을 통한 진정권 보장 의미가 크므로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확대 및 보장

- 상담센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단기간 내에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면전진정 수요 충족
  - 1차 : 우편진정 적극 권장, 2차 : 면전진정 실시
- 화상상담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 교정시설, 경찰서 유치장 등 면전진정 출장 및 현장방문 조사 시 진정함 관리실태 점검 병행
-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 진정함관리 세부 체크리스트 작성
  - 진정함 모니터링 대상시설 확정 및 관리실태 모니터링 실시, 필요시 별도교육 검토

### II-4-2.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 아동복지시설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면서 보호와 통제를 이유로 아동 학대 및 폐쇄적 운영과 이로 인한 아동의 의사표현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획일적 서비스와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한 사회생활 준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
- 그러나 시설내부에서의 자발적 진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부 고발자 없이는 인권침해 현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여건으로 위원회의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유형별 예방대책 마련과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방안을 모색

-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 2011년 기준 보호아동수 기준으로 86.5%(약 14,700명)를 보호하고 있는 총 243개소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

-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보장 실태파악
- 아동양육시설의 구성원(교사와 원생)들의 심리상태와 인권의식 파악
- 총 243개 아동양육시설 중 지역별 분포를 고려, 약 50여 개소(약 20%)를 임의로 선정하여 추진

#### II-4-3.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방문조사

- 노숙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 정신질환, 지적장애 등 중증질환 등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주로 민간단체 또는 개인 중심의 응급구호 수준에 머물렀음.
- 또한 의료 및 치료프로그램과 사회복지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며 노숙인생활시설의 입·퇴소, 생활인의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시설 설치 및 폐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가 상존
- 따라서 노숙인 관련 일시보호, 재활, 요양시설 각 1개씩을 선정, 전문가를 동반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숙인 관련기관 및 시설들의 인권보호 체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

- 노숙인시설 생활인의 입·퇴소, 재활 및 요양과정에서 인권침해 실태 파악
- 노숙인시설 구성원(사회복지사 등과 생활인)들의 건강상태와 인권의식 파악 등

#### II-4-4.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인권보호 기능 개선 방안 마련

- 위원회에 접수되는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중 55% 정도는 시설의 입·퇴원과 관련된 내용임.
-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된 환자에 대한 대표적인 안전장치인 관찰시·군·구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심사 제도가 있으나 심사 구제율은 매년 4%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3년 5개 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대한 위원회 조사 결과 형식적인 심사 운영으로 인해 실질적  
구제기능이 결여된 실태 확인

-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 227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초 및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기능에 대한 점검과 필요시 현장조사를  
확대하여 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에 대한 실제 구제기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세부 운영 현황 파악
  - 정신보건심판위원회별 특성, 심사절차의 차이,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과정  
등 기반조사 실시
- 전체 243개 심판위원회 중 권역별, 구제율 등을 고려하여 20개(광역 2,  
기초 18)를 선정, 현장조사 병행
  - 심판위원회 구성원과 세부 심의과정, 심사청구 누락사례, 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과 분쟁 사례 등을 파악 후 개선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실질 기능 보강과 인권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개선방안 마련 및 권고

#### II-4-5. 정신요양시설 기능개선 방안 마련

- 정신보건시설 중 대표적 시설인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및 입소 환자에  
대한 인권상황 파악을 위해 2013년에 11개 시설(전체 59개 시설 자료  
조사 병행)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실시
-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과 중첩되고 있는 기능 개편을 비롯하여 만성정신질환 정신장애인의  
실질적 인권보호를 위한 요양기능 강화 등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방  
안을 모색
-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 및 토론회,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계  
부처·단체 등과 협의 진행
- 정신요양시설 입소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및 관련 기능 개  
편 방안 검토

#### II-4-6.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 연구

-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처우가 업무 중요도 및 강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는 당사자의 노동권 하락에만 그치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낮은 서비스 질로 이어질 수 있음.
- 종사자의 높은 노동 강도 및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연구가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관련 실태 파악, 국내 법령,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연구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관련 해외 법령 비교 연구 및 외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연구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안 포함) 등

#### II-4-7.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제도 개선 및 거주시설에 대한 선거 관리 지침 모색
-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 시설 생활인 대상 설문, 면접조사
- 관련 국내 법제 연구 및 국제기준·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 II-4-8. 정신장애인 관련 인권정책·법령 모니터링

- 2013. 7월 성년후견제도 도입,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 「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법령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위원회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여러 정책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점검 필요
-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점검 및 개선이 필요

-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 법령 제·개정 사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2009년) 등 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시 이행점검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배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모니터링

#### **II-4-9. 정신장애인 인권개선 포럼 운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장애인 관련 제도 및 정책과제 발굴과 진정사건에 대한 시의적절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 활동가 등과 정례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교류와 협력</li> </ul> |
|---|
- 교수 등 전문가 그룹, 활동가들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정신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현안 등에 대해 논의

### Ⅲ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 1. 기획조사 확대

##### Ⅲ-1-1. 검경 등 수사기관과 군 관련 기획조사 강화

-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과 군 관련 기획조사를 통해 진정 원인이 되는 관행, 정책, 법, 제도, 의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
  - ※ 기획조사는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임
- 관련 규정 및 제도, 관행 등 운영실태 파악
- 상시적인 모니터링(진정사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안 발생시 즉시 조사반을 구성하여 기획조사 실시

##### Ⅲ-1-2. 검경 유치장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

-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조사에도 불구하고 유치장에서의 처우와 환경에 대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광역유치장과 검찰청사내 유치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환경과 처우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수용자의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 예방
- 수용자 기본권 보장 및 시설·환경, 처우 등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조사
-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회 및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 시설운영 우수기관 포상 추진

##### Ⅲ-1-3. 경찰의 모욕죄 현행법 체포의 적법성 연구와 개선

- 경찰관 본인이 사건현장에서 욕설 등 모욕을 당한 경우 상대방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후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관행과 관련, 실질적으로 개인적 법익의 단죄에 공권력을 동원한다는 논란이 있음.
- 따라서 경찰관이 피해자인 모욕죄 현행범 체포 사건에 대해 체포요건과 필요성 및 과잉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 경찰관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 실패와 진정 현황 파악
-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토론회 개최
- 모욕죄 현행범 체포요건과 판단기준 마련 및 정책제언

#### Ⅲ-1-4.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 일상생활에서의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기획조사를 통해 차별관행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 진정사건,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모니터링 하여 기획조사 현안 발굴
- 차별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 및 새롭게 제기되는 차별 이슈 파악
-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와 관련된 차별사안, 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 등 국제인권협약기구에서 반복해서 시정을 권고한 사안 집중 검토
- 차별 진정사건 중 비중이 높은 나이, 사회적 신분 등 사건 유형분석을 통한 과제 발굴

#### Ⅲ-1-5. 장애차별 관련 기획조사 강화

- 언론 모니터링 및 인권단체 등의 제보·민원에 대한 적극적 기초조사 및 필요시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통해 장애인 시설 등의 인권침해 요소 등의 사전 예방 및 인권 보장 방안 모색
- 언론, 단체, 제보, 민원 등 현안사항 기초조사
- 기초조사 토대로 필요시 직권조사 추진

#### Ⅲ-1-6. 장애인 시설 등 방문조사 실시

-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정부정책이 탈시설 소규모화로 변화되고 있고, 개인 신고시설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설거주(이용) 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과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여 방문조사를 통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상황 점검 필요
- 정신요양시설 기능 개편 논의와 함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기능에 대한 파악과 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

-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과 실제 운영실태 파악, 유형별 조사 필요성 등 검토하여 특정 유형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기획
- 사회복지시설 중 다수 시설이 집중된 서울시 지역을 포함하여 4개 지역, 8개 시설을 선정하여 시설의 주된 프로그램 운영 상황, 시설 이용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처우 상태 등에 대해 점검

### Ⅲ-1-7.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매뉴얼 개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사건과 직권·방문조사 실시 사례 등을 분석하고, 현재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기능 평가 연구와 실시 내용 등을 참조하여 기존의 정신보건시설 개별 진정사건 조사관련 매뉴얼을 보완하며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li> </ul> |
|--|
- 정신보건시설의 기존 직권·방문조사 사례 및 결과 분석, 기타 정신보건시설 외의 위원회 기획조사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조사 항목 구성
    - 정신보건시설 기능과 환자 보호의 세부 내용 파악과 검토 병행
  - 2012년 이후 진정사건 추세 및 사건 성향 분석과 기존 정신보건시설 사건처리 매뉴얼에 대한 보완
  - 인권사무소 조사관을 포함하여 정신보건시설 진정사건 담당 조사과 전원이 참석하는 내부 간담회를 통해 기존 조사 업무편람(매뉴얼)을 공유하고, 기획조사와 관련한 매뉴얼 보완
  - 조사관 간담회, 기타 회의를 통해 인권사무소 담당사건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협력 강화



##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 Ⅲ-2-1.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개선 방안

-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 결론의 명확화, 조사과정의 친절도 제고 등을 통해 진정인 만족도 제고
- 실질적 조사·구제를 위하여 조사중해결 및 법률구조요청 등 권리구제 방안 적극 모색
- 사건처리의 체계화와 조사·구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조사구제규칙 등 관련규정의 개선과 전산시스템화 정비, 각종 통계처리 개선
- 인용사건에 대한 권고회신 및 수용 여부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권고의 실효성 확보

- 사건처리 체계화를 위한 조사구제규칙, 운영규칙 등 관련규정 개선
- 기각·각하 사건영역에서의 조사중해결 강화, 법률구조요청 가능성(대한 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업무협약 활용) 검토와 실현 방안 마련
-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한 진정처리시스템 개선과 각종 통계처리 개선

### Ⅲ-2-2.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안대응과 현장해결 활성화

- 지방선거 전후로 제기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각종 사회현안 발생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이를 위하여 인권지킴이 활동을 정비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인권 침해 사안이나 경미한 사안은 조사중해결, 합의종결 등을 활용하여 현장해결을 강화하는 등 권리구제의 효과성 제고를 모색

- 현행 인권지킴이 활동 운영과 방법에 대한 점검 및 활동 기준 등 마련
- 인권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대응으로 효율적인 인권 침해 예방
- 인권보호와 옹호를 위한 조사권 보완 및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Ⅲ-2-3. 각급학교 관련 진정사건 조사관 매뉴얼 개발

- 사립학교가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각급학교 관련 사건은 연 450건 이상 접수
- 각급학교 관련 사건은 침해유형이 다양하나, 일부 정형화가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진정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구제효과를 제고

- 2010년 이후 각급학교 진정사건 처리 결과 분석
- 침해유형 분류 및 각 유형별 구체적인 조사기법 연구
- '조사중 해결' 및 합의종결 기법 적용 가능성 모색

### Ⅲ-2-4. 차별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 방안 마련

- 차별 관련 법제 변화 및 축적된 위원회 결정, 복잡·다양화 되고 있는 차별 진정사건의 흐름을 반영하여 차별판단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차별 판단기준 재정립 및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
  - 조정, 합의종결, 조사중해결 등 다양하고 유연한 해결 방안 활성화

- 2013년 추진결과를 포함하여 2014년에 지침 개정, 발간
  - 2014년 추진 차별 사유 : 성별, 혼인여부, 가족형태, 성희롱, 용모, 장애, 사회적 신분, 기타 사유 등
    - ※ 2013년 추진 차별 사유 : 나이, 학력, 전과, 종교, 사상·정치적 자유, 인종(피부색·출신국가·출신민족 포함)
- 대안적 해결 방안 활성화를 통한 구제조치 실효성 강화
  - 조정, 합의종결, 조사중해결 등 진정원인 해소를 위한 유연한 접근

### Ⅲ-2-5. 장애인 특수학교 등 교육권 관련 조사 체크리스트 개발

- 최근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등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등 인권 침해 관련 진정사건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특수학교 등에서의 장애 유형별 조사 항목과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부재
- 이에 장애인 특수학교 등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조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조사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

-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등 조사 내용 자료취합 및 의견수렴
- 장애인 특수학교 등 교육권 진정사건 조사 등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 3. 인권상담 서비스 만족도 제고

#### Ⅲ-3-1. 화상채팅·SNS 상담 운영체제 안정화 및 홍보

- 2014년도에 화상·채팅·SNS 상담시스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화상·채팅·SNS의 장점을 살려 청각·언어 장애인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자의 상담 접근성을 높여 인권상담 활성화에 기여

- 화상·채팅·SNS 상담 홍보
- 화상·채팅·SNS 상담 운영체제 안정화
  - 화상상담(매주 월요일 수화 화상상담), 채팅상담, SNS 상담
- 화상·채팅·SNS 상담에 대한 통계 기준 마련

#### Ⅲ-3-2. 상담 전문성 향상 및 상담역량 강화

- 위원회 관문으로서 인권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역량을 강화하여 상담 만족도 및 권리구제 효과성을 제고
- 상담 전문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상담 노하우 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모색

- 상담 전문성 및 상담원 역량 강화
  - 인권 현장 실무 수습, 체험 등 상담 전문성 제고
  - ‘인권상담 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민원사례 발표회’ 개최
- 상담전문기관으로서 위상 정립
  - 국가기관 및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위원회 관할사항이 아닌 경우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 안내
  -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위원(변호사, 노무사 등)의 2차 상담 활성화
  - 전문상담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상담 네트워크 구축(연2-3회)

### Ⅲ-3-3.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활성화

-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인권취약계층(지역)의 위원회 접근기회 확대
  - 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홍보하여 대국민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인지도 제고
-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통해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지역 및 계층의 상담 접근성 제고
    - 순회상담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과 사전협조로 상담 활성화
    - 상담수요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정기적인 순회 상담
  - 인권상담과 더불어 위원회 활동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위원회 위상 및 인지도 제고

### Ⅲ-3-4. 인권상담을 통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 인권상담을 통한 치유기능을 제도화하여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군대내 왕따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 심리치유 상담절차, 운영체제 마련
    - 1차 전문상담원, 2차 심리치유 전문가 상담 체제 마련
    - 심리치유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3인 -5인)
    - 심리치유 사례 분석을 통해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
    - 내담자 만족도 조사, 유형별 사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 Ⅲ-4-1. 인권체험관 운영(인권사무소 공통)

- 서울 및 인권사무소별로 인권체험관을 운영하여 지역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
- 인권전시관 기획전시(부산)
    -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테마별 전시회 개최

- 교육기관 및 단체등과 협의하여 견학,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 인권영화, 만화, 포스터, 월간인권 등 상시적 전시 및 상영
- 인권테마역사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광주)
  - 인권테마역사 체험프로그램 운영(2014. 4.~10.)
  - 광주지역 초, 중고생들의 현장체험프로그램 정착을 위하여 1차적으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인근(전남 담양,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지역교육청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
- 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역할극, 인권작품 창작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대구)
  - 전시물 활용을 통한 인권감수성 교육, 장애체험 등 교육프로그램 진행(대구)
  - 인권나무 만들기, 장애체험 등 찾아가는 인권체험 프로그램 진행(광주)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등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광주)
- 방문교육 및 운영 관련 간담회
- 시설물에 대한 보강 및 콘텐츠 교체
  - 노후 시설물 교체, 결정례 및 위원회 동향 등 콘텐츠 교체

#### Ⅲ-4-2. 인권상담네트워크 운영(인권사무소 공통)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상담 단체 간 상담내용의 공유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 확대</li> <li>○ 인권상담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상담 시너지 확대 도모</li> <li>○ 인권상담관련 단체와의 연대강화로 상호보완적 업무협조와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li> </ul> |
|---|
- 인권상담네트워크 사례 발표회
    - 단체별 상담사례 발표 또는 특강
  - 인권상담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상담 기법 교육 및 상담원 소진 회복 프로그램 운영

### Ⅲ-4-3. 인권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인권사무소 공통)

- 인권취약계층 및 원거리 지역의 국민들이 위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순회상담, 조사관 파견상담 등을 실시
  - 찾아가는 인권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권리구제의 신속성, 효율성 강화
- 인권취약계층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 인권상담센터 및 지역별 인권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정책 대안 발굴의 기회로 활용
  - 원거리 지역 조사관 파견상담 실시
  - 인권특강, 관련단체 간담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병행

### Ⅲ-4-4. 인권취약지역 진정함 모니터링(인권사무소 공통)

- 정신보건시설 등 인권취약계층의 진정함 관리실태 모니터링
  - 시설입소자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절차 안내
- 진정함관리 세부 체크리스트 작성
  - 진정함 모니터링 대상시설 확정
  - 진정함 관리실태 모니터링 실시, 필요시 별도교육 실시 검토
    - 조사관 면전 및 진정업무 수행 시 수시로 진정함 점검 및 교육

### Ⅲ-4-5.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인권사무소 공통)

-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 노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내 노인인권을 증진
- 노인인권지킴이단 6기 모집 및 운영
    - 내용 : 관할지역내 노인인권지킴이단 공개 모집 및 위원회 과제를 중심으로 인권지킴이 활동 전개(필요시 지역과제 발굴)
    - 방식 : 지킴이단 교육(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주제) 및 현장답사, 보고서 작성, 워크숍 등 개최

#### Ⅲ-4-6.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념 토론회 개최 및 모니터링단 운영(인권사무소 공통)

-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의식개선 및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이행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에 기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6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 점검
    - 내용 : 관할지역 내 장애인차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집중과제 선정에 따른 점검
    - 방식 : 현장 점검 및 관련 토론회, 대상기관 협의 등

#### Ⅲ-4-7. 이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행복나눔 인권음악회' 개최(부산)

- 이론적·주입식 인권증진 캠페인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1회성 행사가 아닌 기수별, 지역별 계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역인권문화의 저변 확산에 기여
-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공장 등 지역을 선정하여 인권음악회 개최
  - 관내 예술단체 등과 공동으로 인권음악회 개최
    - 부산시립합창단 등 관내·외 예술단체와의 협의 추진
    - 이주민들을 위한 특성화된 내용(각국 전통음악 공연 등) 포함
  -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어울림행사 실시
    - 마술공연 또는 레크레이션 등 문화·예능공연 실시
    - 이주민 및 원주민들의 참여마당(룰렛퀴즈타임, 포토타임 등)
  -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 현수막, 홍보리플릿 및 기념품 제작·배부

### Ⅲ-4-8.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도시' 캠페인(부산)

-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접근성, 재화·용역의 이용시 시설접근성 및 편의 제공 등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관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편의 증진을 도모
- 은행·영화관·병원·상점·식당·학교 등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제공 우수 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장애인을 위한 '턱이 없는 도시' 조성 촉진

### Ⅲ-4-9. 지역인권문화 확산 및 시민 참여 홍보사업(부산)

- 프로야구 롯데경기 시구행사에 참여하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시민 홍보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인권문화 확산에 기여
- 블로그 및 인권기자단을 운영하여 온라인상의 소통 시스템 구축
- 부산지역 축제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롯데 자이언츠 구단 대시민 참여형 홍보협력사업
  - 프로야구 경기 상임위원 시구행사 진행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유관기관을 초청하여 유대관계를 강화
- 인권사무소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
  - 위원회 홍보매체 다양화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반 구축
  - 인권기자단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 활동보고회 등 개최
- 부산 주요 축제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 부산의 주요 축제에 캐리커처, 인권포토존 등 다양한 홍보활동
  - 트위터, PCRM, 홍보액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 Ⅲ-4-10. 지역사회 이주민 차별의식 개선 캠페인(광주)

- 이주민 관련 차별예방 홍보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 차이 및 인권 이해를 도모하고, 차별적 인식을 개선
- 차별인식 개선 캠페인
  - 지역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이주민에 대한 차별내용을 소개하여 지역주민들의 차별적 태도와 편견을 해소하는 캠페인 진행



### Ⅲ-4-11.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운영(광주)

- 민·관·학이 함께 하는 소통과 학습을 공유하고 있는 인권연구모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 인권역량의 확대와 관련 기관의 인권감수성 제고에 기여
- 위원회 주요 전략과제 및 지역 주요 인권의제 중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학습모임 진행
  - 인권담론과 세부영역을 구분 배치하고 다양한 인권의제에 대한 논의 공간 창출
- 관련 전문가 그룹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기반 형성을 통한 인권네트워크 모델 창출

### Ⅲ-4-12. 인권활동가 연수 프로그램(광주)

- 인권단체 활동가들과의 교류·협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위원회 및 지역사무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위원회와의 협력관계 공고화에 기여
- 분야별 인권영역의 상관성과 불가분성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연대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 창출
  -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더불어 각기 다른 영역에서의 세부 활동 내용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위원회 정책 및 사업방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역 인권의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 형성과 위원회와의 파트너십 형성

### Ⅲ-4-13.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광주)

- 지역사무소의 경우 전국적인 인권이슈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인력 및 예산 운용의 한계 등으로 언론홍보에 대해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 등으로 지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현실
- 일반시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양질의 인권정보 제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 대두 돼 매체홍보를 진행

-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의 강화
  - 광주지역 주요 일간지를 통해 인권사무소의 행사 및 위원회의 주요정책 및 전략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보도자료 및 언론응대
- 인쇄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의 강화
  - 인권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지역민 인지도 강화

#### Ⅲ-4-14. 인권의제발굴 시민참여 인권창안포럼 운영(대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역별 권리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인권의제 발굴 및 공론의 장 마련, 인권옹호그룹 형성 및 협력 강화</li> <li>○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li> </ul> |
|---|
- 정기적인 포럼 운영 : 의제 발굴 간담회, 토론회 개최(격월 1회)
  - 2013년 창안포럼 활동에 대한 지역 차원의 후속조치
  - 인권창안포럼 운영
    - 포럼 의제에 따라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권리구제 방법모색
  - 본부 관련부서와 포럼운영결과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방안 협의 활성화

#### Ⅲ-4-15.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대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 진입, 인종차별 사례 이슈화 등으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 필요</li> <li>○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삶의 장을 마련</li> <li>○ 다문화 인권교육 수요 관리, 강사단 지원 및 협력 등을 통해 이주민권 증진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li> </ul> |
|--|
- 이주관련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홍보물 제작, 활용
    -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이주민 관련 기념일에 맞는 홍보를 병행하여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차별적 인식 개선
  -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지역신문 등을 이용한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
  - 인종차별 방지 및 이주민 인권존중 확산을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 다문화 인권교육 강사 역량 강화, 강사 지원협력,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교육 실시

#### **Ⅲ-4-16. 매체 활용 및 온라인 접근성 강화 홍보(대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온오프라인 홍보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위원회 및 인권인식 제고 및 지역민의 참여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도모</li><li>○ 새로운 세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 기법 개발</li></ul> |
|--|
- 지역언론매체 활용 홍보, 웹블로그 운영, 뉴스레터 발행,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 활용 홍보
  - 시민참여형 인권기자단 운영

##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IV-1-1. 인권교육 법제화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유엔의 인권교육훈련선언(2011.12.19.)은 모든 사람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1차: 2005~2009, 2차: 2010~2014)에서는 각국에 인권교육을 교육법에 포함시키거나 인권교육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장
-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
- 특히 「정신보건법」,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개별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적 이행방안 및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

-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 「인권교육법」(안) 주요 쟁점 검토
  - 「인권교육법」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
  - 「인권교육법」(안) 발의를 위한 대국회 협력 및 인식제고 활동 강화
  - 개별 법령·조례 등 법제화 대응 및 인권교육 조정·지원 등 체계화 추진
- 국내·외 인권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학교, 군대, 노숙인 등과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정신보건, 다문화 등 분야별 인권교육 협의 추진
  - 인권교육 해당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인권교육에 관한 정책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인권교육관련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의 상호조정
  - 선진 인권교육 기법 습득, 외국의 인권교육 모범사례 도입, 국내 인권교육 모범사례의 소개 등을 위해 국제 인권교육 전문기관 등과의 네트

## 워크 구축

- 인권교육 국제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대양주, 북미, 유럽, 중남미 등 각 권역별 인권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거점 마련

### IV-1-2. 인권친화적 돌봄시설 기반조성

- 영유아분야 인권교육을 위한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체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권친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고양, 영유아 인권증진을 도모
- 국가인권위원회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보급 및 확산
-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사회 전체의 노인 인권의식 제고

- 돌봄시설 인권교육을 위한 기반구축
  - 영유아 교육 또는 보육 관련 정부기관, 관련 협회, 전문가를 주축으로 협의회 구성 및 지속적 협력
- 국가인권위원회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보급 확산
  - 유아인권교육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해 프로그램 보급 확산

### IV-1-3.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 이행

-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고등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공무원,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 또한 준(para)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직에 대한 현업교육(On-job training) 또는 보수교육(in-service)으로서 인권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내 인권에 반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과정 개정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 인권교육의 제도화 기반 조성

- 공공기관 인권교육 현황 조사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의 인권과정, 인권교과목, 인권특강 등 개설 현황 조사
  -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교육과정 개설, 확대, 내실화 방안 모색

-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 사회복지학 전공자, 교수, 사회복지사 등 집단별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와 인권실천 혹은 인권교육에 관한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 논의
- 대학교 인권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 내실화 방안 모색
- 위원회와 MOU 체결대학간 협의회 개최
  - 대학부설 인권기구 설립 및 활동 강화,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 방안 등 모색
- 2014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
  - 예비법조인에 대한 사전 인권교육 실시 : 동계, 하계 2회(2주간 실시)
- 개정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정 과정 모니터링
  - 2014년 개정 발행 교과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개선 권고 추진

#### IV-1-4.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조사, 해외선진사례 비교연구를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의 모델과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증진
-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국내외 동향 및 해외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 관련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 등 질적 연구

##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 IV-2-1.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학교영역, 공공영역, 시민영역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인권교육 종합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도모

- 2014년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 인권교육 종합계획 모니터링 결과보고(반기별)

#### IV-2-2. 인권리더십 향상과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의거 공무원 및 법 집행관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li> <li>○ 우리사회 인권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결정자를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향상과정 등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인권정책 전문가 양성</li> <li>○ 지방의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로 지방행정 정책 및 각종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 인권요소 반영 도모</li> </ul> |
|--|
- 일반공무원(중앙, 지자체)·사법부 공무원 대상 인권 정책리더과정 운영
  - 초선 지방의원을 위한 2014년 인권아카데미 개설 및 2013년도 인권리더십 참여 의원 중심의 심화과정 운영
  - 학교관리자 인권정책리더과정 운영

#### IV-2-3.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li> <li>○ 인권강사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체계적, 균질적인 인권교육 실시</li> <li>○ 스포츠, 기업, 방송·언론 등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분야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현할 전문 강사 양성</li> </ul> |
|---|
- 공무원 분야 : 일반행정, 학교 등 각 1회 강사양성과정 운영(2회)
  - 인권교육 전문인력 대상 : 정보인권, 다문화, 아동(학교) 분야(3회)
  - 신규 분야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2회)

#### IV-2-4.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권교육 강화 필요</li> <li>○ 방송·언론, 정보인권, 기업인권 등 새로운 분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정</li> </ul> |
|---|

운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증진 도모

- 위원회 업무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는 방문 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시

- 이주민(북한이탈주민 포함) 인권증진 감수성 향상과정(2회)
- 기업·정보인권 분야 인권감수성 향성과정(각 1회, 총2회)
- 학교교사 인권감수성 향성과정(1회)
- 여성인권증진 인권감수성 향성과정(1회)
- 방송·언론 분야 인권감수성 향성과정(1회)
- 방문프로그램 및 특별인권교육 연중 실시

#### IV-2-5. 장애인, 노숙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학교 관리자 및 종사자, 당사자인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정신보건법」 제6조 인권교육 의무화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지정기관으로 위원회를 지정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권교육 수요에 대응

- 장애분야,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2회)
- 장애인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4회)
-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의무화과정 전국단위 실시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1회) 및 의무교육 실시

#### IV-2-6. 돌봄시설 인권교육 강화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內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영유아·아동 및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인식 제고 및 인권감수성 향상 뿐 아니라 인권교육 정례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한 각 과정별 인권교육 제도화 기반 마련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인권강사 양성



- 돌봄시설 관련 찾아가는 인권교육(자격연수 등) 실시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감수성 향상 및 인권강사 양성과정 실시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감수성 향상 및 인권강사 양성과정 실시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감수성 향상 및 인권강사 양성과정 실시

#### IV-2-7.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확산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의 인권교육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취약분야(군·경)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li> <li>○ 군·경 자체 인권강사를 양성하여 안정적인 인권교육 정착</li> <li>○ 군·경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통한 인권에 대한 이해 제고</li> </ul> |
|---|
- 군 및 경찰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보수교육) 운영 (2회)
  - 군인 및 경찰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총7회)

#### IV-2-8.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 강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및 증진의 의식을 기르고 인권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인권교육 강화</li> <li>○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고양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에 균등하게 인권교육의 기회 제공</li> <li>○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의식 변화 및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 인권교육 실시</li> </ul> |
|---|
- 학교폭력 예방, 장애아동 인권증진, 다문화, 정보인권 관련 찾아가는 인권교육 수요조사 및 실시
  -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평가

#### IV-2-9. 공공영역 인권교육 확산(인권사무소 공통)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영역(지자체 공무원 등)의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li> <li>○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권강사단을 통한 인권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li> </ul> |
|--|
- 공공분야 인권강사단 워크숍 개최
  -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 IV-2-10. 민간영역 인권교육 확산(인권사무소 공통)

- 중점 분야(정신보건종사자, 노숙인종사자 등) 대상자의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 중점 분야(사회복지 등) 대상자의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 분야별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권강사단을 운영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
- 다문화 분야 인권강사단 보수교육
  -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정신보건법」 제6조의 2 관련)
    -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강사단 보수교육
    - 시·군·구 정신보건 업무담당 공무원 인권교육
  - 노숙인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 찾아가는 인권특강
    - 다문화, 장애, 학생 등 찾아가는 인권교육
  - 인권교육단체와 간담회 실시로 민·관 협력 파트너십 형성

#### IV-2-11. 인권교육 강사단 운영 및 인권 캠프 개최(부산)

- 분야별 인권강사단을 운영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
  -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를 개최함으로써 인권의식 증진
  - 교과서 모니터링학생추진단 운영을 통해 친인권적인 학교문화조성에 기여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7월)
  - 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과 함께 고등학생 청소년노동 인권캠프(1박2일) 진행(8월)
  - 청소년 노동인권강사단 운영 및 분야별 강사 운영(연중)
  - 교과서모니터링학생추진단 운영
    - 교과서 모니터링학생추진단 전국 워크숍(1회), 지역 모임(4회)

###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 IV-3-1.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접근성 강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의 확대운영을 통해 인권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여 인권교육의 효과성 제고</li> <li>○ 사이버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일반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사이버인권교육센터의 홍보 및 다양한 교육방법의 도입</li> </ul> |
|---|
-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확대 운영 : 2013년도 7종 → 2014년도 9종
  - 사이버 인권교육 대상 확대 홍보 : 공무원 및 교원 외에 시민단체, 사회복지기관, 각종 기업 및 단체 등 콘텐츠에 맞는 대상을 발굴하여 홍보
  - 콘텐츠 공동활용 기관 확대 : 자체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콘텐츠의 공동활용 확대(2012년 10월 현재 22개 과정 14,130명 이수)
  - ON-OFF라인 혼합교육 확대 : 강사양성과정 등에서 사이버인권교육과정과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신규 개발(콘텐츠 개발에 포함)

####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현황 및 계획>

	2013년	2014년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이해</li> <li>· 인권의 이해 심화</li> <li>· 행정과 인권</li> <li>· 성차별예방과정</li> <li>· 장애차별예방과정</li> <li>· 장애차별금지법의 이해</li> <li>· 선생님을 위한 인권 플러스</li> </ul> (7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이해</li> <li>· 인권의 이해 심화</li> <li>· 행정과 인권</li> <li>· 성차별예방과정</li> <li>· 장애차별예방과정</li> <li>· 장애차별금지법의 이해</li> <li>· 선생님을 위한 인권 플러스</li> <li>· 차별 일반</li> <li>· 군대와 인권(9종 운영)</li> </ul>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 일반</li> <li>· 군대와 인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분야</li> <li>· 정신보건 분야</li> <li>· 다문화 분야</li> </ul>
신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분야</li> <li>· 정신보건 분야</li> <li>· 다문화 분야</li> </ul>	

### IV-3-2. 사이버인권교육센터 고도화

-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이버(PC, 스마트폰) 인권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기반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교육 접근성 및 효과성 제고
- 사이버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일반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관리시스템(LMS) 개선

- 모바일 기반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모바일 홈페이지(LMS) 운영으로 최신의 교육환경 제공
- 사이버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관리시스템(LMS)의 유지·보수
- PC용 콘텐츠를 스마트 기기(태블릿 PC, 스마트 폰 등)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모바일용 콘텐츠로 전환
-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이버 교육 콘텐츠의 개선

### IV-3-3. 교육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야별·대상별·단계별 교육자료 개발 필요
-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간적·공간적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 인권교육자료 개발 지속 필요
- 대상, 내용, 수준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및 접근 용이한 교육자료 제공
- 장애인의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할 의무를 위해 인권교육 교재 및 콘텐츠에 대한 웹접근성 강화
- 인권의 흐름과 추세에 대한 적절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 인권교육 교재 개발
  - 교재 개발(2종) : 사회복지와 인권, 지방자치와 인권
  - 교재 개정(1종) : 행정과 인권
  - 인권교육 교재 발간 및 보급

- 사이버 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 및 전부개정
  - 신규 : 세계인권선언, 학교폭력예방
  - 전부개정 : 인권의 이해(인권의 이해와 인권의 이해 심화과정 콘텐츠 통합)
- 돌봄시설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3종)
  - 아동권리협약해설 교육콘텐츠, 보육교사용 인권교육 콘텐츠, 노인인권 길라잡이
- 위원회가 제공하는 인권교육 교재 및 콘텐츠의 웹접근성 점검

#### IV-3-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전문 잡지 발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월간 &lt;인권&gt; 잡지를 발간·보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인권취약계층의 자기역량 강화</li> <li>○ 인권 잡지를 통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 인권의식 향상과 우리사회 인권문화 확산</li> <li>○ 특히 군 부대 등 배포를 확대하여 군인 인권감수성 제고 및 군대 내 인권문화 형성에 기여</li> </ul> |
|---|
- 격월간 '인권' 잡지 발간
  - 웹진 '인권' 보안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 시각장애인 이용 서비스
  - 시민기자단 운영

#### IV-3-5. 인권영화 제작과 보급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침해와 차별은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병행해 중장기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인권존중의 태도·정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li> <li>○ 대중적 친밀도와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인권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고, 인권영화의 극장개봉 이후 비디오와 DVD 출시, TV와 케이블방송 방영, 모바일 및 인터넷 상영, 국내외 영화제 상영 등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학교·공공부문, 시민사회단체 등 인권교육 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li> </ul> |
|---|

- 인권 영화 등 콘텐츠 개발
  - 인권영화 중장기 계획과 2014년 위원회 중점과제와 연계한 영화 주제 선정(2014년 스포츠 인권 주제 검토)
  - 내·외부 의견수렴, 감독선정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한 주제 확정 예정
- 2013년 제작 11번째 인권영화 극장 개봉과 보급
  - 배급시사, 극장개봉, 영화제 출품 등
- 2014년 12번째 인권영화 제작
  - 제작 전반 지휘 및 개발, 작품 납품 등

#### IV-3-6. 인권작품 공모사업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인권 관련 이슈를 국민들이 직접 다양한 매체와 기법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 친화적 문화 형성에 기여</li> <li>○ 입상한 작품들을 인권교육·홍보콘텐츠로 활용하여 사회 저변의 인권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li> </ul> |
|---|
- 공모 분야 선정 및 공모사업 기본 계획 수립
  - 분야별 관심대상 분석을 통해 관심대상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실시
  -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작 선정
  - 전시회 및 상영회를 통한 작품 공유, 사이트 업로드를 통해 교육자료 제공 등 수상작품 활용

#### IV-3-7. 인권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인권과 관련하여 사회적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정책, 제도, 국내외 동향과 현안, 권리구제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li> <li>○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전달하고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원회 위상 강화</li> <li>○ 또한 언론과의 적극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인권 전반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증대</li> </ul> |
|--|

- 연간 주요 업무 설정과 전략 홍보
  - 2014년 위원회 역점사업 및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연간 캠페인 주제 및 5개 내외의 주요 업무 설정
  - 매체별, 시기별 전략적 실행 방안을 통한 정책·기획홍보 강화
- 사전·사후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대응 체계화
  - 사전 보도계획 수립·유기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선제적 언론 대응 강화 및 문제보도의 발생원인 사전 예방
  - 취재진이 선입견,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 및 자료 제공
-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언론이슈 관리
  - 이슈분석을 통해 언론대응 방향, 주요관리 쟁점을 사전 파악 및 적용하여 대언론 홍보 강화 추진
- 출입기자단과의 정기·비정기적 만남을 통해 소통 강화
  - 정기적으로 미디어데이(분기별 1회)를 개최하여 정책 및 현안 설명
- 지속적인 뉴미디어 홍보 활동 전개
  - 전문업체를 통해 트렌드에 맞고 효과적인 뉴미디어 활동 전개
  - SNS의 대표적 매체인 페이스북을 이벤트와 프로모션 대상 매체로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 운영 도모
- 제3회 인권보도상 시상(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진행)
  - 참가자격 완화 및 충분한 홍보를 통해 참가자수 확대 추진
- 위원회 행사의 홍보업무 사전 협의 체계 마련
  - 국제회의, 주요 발표회·세미나·토론회 등 외부인사 참여 행사를 대상으로 홍보 방안 검토 자리 마련
  - 부서별 예정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 홍보를 고려한 업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정례화
- 위원회 주요결정례 동영상 제작
  - 이벤트 등의 형태로 뉴미디어 홍보를 통해 적극 전달
-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 참여시 언론 노출 극대화
  - 사전 보도자료(주요의미, 쟁점, 전체일정 등) 배포(3일전) 및 기자 설명
  - 현지 대사관과 사전 협조하여 현지 언론과의 연계방안 모색

#### IV-3-8. 청소년 인권문화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폭력 및 자살예방 인권포럼 등(대구)

- 학교라는 틀에서 특별주제(폭력, 자살, 다문화, 장애 등) 교육과 더불어 생활과 삶 전반에 걸친 인권에 대한 생활교육이 필요
- 대구시 교육청은 2012년도 교육권리헌장 제정, 2013년 3월 위원회와 '인권교육 MOU' 체결을 계기로 적극적 개선 추진 의지를 보임.
- 따라서 아동인권 향상을 위하여 당사자의 활동 강화 및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 학교내외 청소년 인권동아리 구성 제안 및 운영
  - 학교 내, 탈학교 청소년을 포괄하는 인권동아리 운영(인권선언수첩, 인권위원회 및 인권기관단체 방문프로그램 등) 및 안내 자료 제공
  -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공통 프로그램과 개별 동아리 특성을 살린 주제별 심화(예, 발달장애인, 역사 속 여성인권변화 등) 프로그램을 진행, 인권골든벨, 동아리 활동보고회 개최
- 청소년 폭력 및 자살예방 인권포럼 구성 운영
  - 참석 대상 : 학부모, 교사,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실무자들
  - 포럼 주제 : 2014년도에는 학교, 집, 사회의 주제를 각 선정, 주제별로 인권상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갈등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포럼 개최 : 연 1회 정기적 개최
- 청소년 인권지킴이 연극제
  - 청소년들이 인권실천 과정(차별 철폐, 인권옹호활동 등)을 연극형태로 익히고 나누는 자리 마련
  - 완성된 연극작품은 인권체험관의 프로그램으로 활용



## 1. 장애인 차별시정 강화

### V-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2014. 4월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6년간 성과와 의미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식제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의제 발굴
- 「장애차별금지법」 6주년 성과 및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및 분석
  - 「장애차별금지법」 이행상황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등

### V-1-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2014년은 「장애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한 지 4년이 되는 해로써 지난 3년간의 모니터링 개선조치 이행 현황 점검과 동시에 동법에 규정된 차별금지영역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국민 인식제고와 실효적 이행 도모
-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6개지역 모니터링단 구성
  -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협의, 자료집 발간 및 결과보고회 개최

### V-1-3. 장애인 참정권 보장 강화 및 이행 모니터링

- 위원회는 2012년 「장애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 상황을 점검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한바 있음.
- 2014년 6월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장애인의 참정권 관련 문제요소가 개선되었는지 등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동시에 선거 관련기관의 자체적인 점검시스템 구축 유도

- 장애인 참정권 관련 개선사항 이행점검
- 관련기관 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

#### V-1-4.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마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정부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판정기준 마련,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발달장애인지원법」, 「한국수어법」, 「장애인 건강보호 및 보건법」 등 법률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li> <li>○ 더불어 위원회가 권고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및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점검 등 후속 조치가 필요</li> </ul> |
|--|
- 유관부처의 법령 제·개정, 정책입안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장애계 현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
  - 각 사안별 위원회 입장 마련 등 대응방안 구축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등 정책권고 사안에 대한 이행점검

#### V-1-5.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57.3%이며(보건복지부, 2011장애인실태조사), 보조기구지원사업 재원의 분산과 절대적 자원 부족으로 인한 보장범위 협소성의 문제, 부처 간 전달체계 분산과 차단에서 오는 비효율성의 문제, 보조기구 지원 효과의 최적화를 위한 전문서비스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의 건강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li> <li>○ 따라서 장애인 건강상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보건의료이용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li> </ul> |
|--|
- 장애인 건강권 실태 파악, 관련 국내 법령,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연구
  - 장애인 건강권 관련 욕구 및 애로점 조사
  - 장애인 건강권 관련 해외 법령 비교 연구, 국내·외 판례 및 외국 사례 연구

#### V-1-6.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

- 주거는 의·식·주로 대표될 만큼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이며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주거복지나 주거지원사업은 상당히 미약해 영구임대주택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9%에 불과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용 장애인은 1.0%에 불과한 실정(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 한편 2012년 2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이 역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지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동법의 실질화 및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실태 파악, 관련 국내 법령,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연구
-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관련 해외 법령 비교 연구, 국내·외 판례 및 외국 사례 연구
- 장애인 주거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안 제시 등
-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확산 방안 연구 등

#### V-1-7.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장애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와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등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교에서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현실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서로 다른 방식의 교육이 수행되어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의 실질화,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교재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태 및 문제점 파악, 장애인의 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목적으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장애학생 교육권 관련 실태 파악, 국내 법령,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연구

- 장애학생 교육권 관련 해외 법령 비교 연구, 국내·외 판례 및 외국 사례 연구
-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안 포함) 등

#### V-1-8.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에 도입</li> <li>○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선택하고 고용·관리할 수 없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고, 시행 기관에 대한 관리나 평가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활동보조인이나 서비스 이용자 간에 성추행 및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특성 상 서비스 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li> <li>○ 따라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서비스 질 관리 및 평가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li> </ul> |
|--|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관련 실태 파악, 국내 법령,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연구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관련 해외 법령 비교 연구 및 외국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현황 연구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안 포함) 등

#### V-1-9.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문화행사 개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장애분야에 비하여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 지원 환경은 더 열악하며, 정신장애인 중 정신질환 경험자 등을 위한 치료·요양·재활 등의 시설 기능과 시설 유지 정책 등에 대한 개편 요구가 증가</li> <li>○ 따라서 위원회 진정사건으로서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정신보건시설 분야 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지속시켜 활성화하여 관련 법제 개선의 기반 마련</li> </ul> |
|---|
- 정신보건시설의 비자의 입원절차 등의 개선 또는 혁신을 위한 관련 단

- 체, 학회,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인권사무소와 연계한 전국적인 토론회 실시
-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멘토·멘티가 되어 음악, 문학(시, 수필, 동화 등), 미술(화보) 등의 발표회(문화행사) 개최

## 2. 성차별 시정 강화

### V-2-1.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계속)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정치, 사회문화 전반적인 영역에서 제기되는 성차별 이슈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위원회 위상 강화</li> <li>○ 주요 성차별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li> </ul> |
|--|
- 성차별 이슈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주요 정책 및 입법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언론·학계 동향 모니터링 및 성차별 의제 검토
    - 성평등 관련 지수에 대한 포괄적 검토 및 개선과제 발굴
  - 공적분야 의사결정 부문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2014. 6.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모니터링 및 정당법 등의 검토
  -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상황 개선
    - 대형 유통업, 상담원, 서비스분야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공론화를 위한 유관 노동조합, 기업체 등과의 협력방안 모색
    - 여성 감정노동자 차별해소의 일환으로 홍보협력과와 협력하여 판매종사원이 많은 대형 유통업 등과 공동 캠페인 전개

## V-2-2.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개선(계속)

-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315만명(41.4%)을 차지하고, 여성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비정규직의 63% 수준
  - 2013년에 실시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인권상황의 개선 도모
- 여성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정책권고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토론회 개최
  -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 V-2-3. 특정직 공무원 성차별 개선(계속)

- 여성들의 직업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종전 남성들의 대표 직업으로 여겨지던 경찰, 소방, 교정 등의 직종에도 여성진출이 증가
  - 오래된 남성 중심적 관행으로 채용 및 근무조건 등에 있어 보이지 않는 성차별이 존재함에 따라 공무원 특정직 분야 성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차별관행 개선의 토대 마련
- 경찰, 소방, 교정 등 특정직공무원 성차별 실태조사
    - 특정직 여성공무원 채용 시 성별 분리채용 및 선발인원 제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책 제언

# 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개선

## V-3-1.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5년 기획사업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령차별금지법」 시행효과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 실효성 제고
  - 나이차별 진정사건은 2012년 166건으로 2011년 146건 대비 증가, 2013년 10월 까지 114건 접수 등 여전히 나이에 의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어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연령차별 금지제도 시행 효과 점검 및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 개최를 통한 공론화 및 정책의제 발굴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효과의 점검 및 개선을 위해 학계, 법조계, NGO 등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 인권사무소, 유관 단체와 연계한 지역 간담회 등으로 지역 여론 확산
-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제안되는 과제를 정책의제로 발굴
-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설명 및 홍보 활동으로 고용에 있어 차별 예방
  - 취업박람회,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활동,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 활동 강화

##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 V-4-1.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관련 홍보

-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써 2014년에는 여성 군인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피해자 구제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인권친화적인 군대 문화 조성
- 여성 군인 등 군대분야 성희롱 예방 및 구제 홍보물 제작·보급
  - 군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고충상담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병행

### V-4-2.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및 구제(계속)

- 위원회 진정사건 통계 및 2013년에 실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료과정의 성희롱은 의료기관내 진료과정 관행으로 인한 인식 미비 등의 이유로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과정에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인과 성희롱 피해자 간 성희롱에 대한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계기 마련

- 2013년 ‘진료과정의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이드(안) 마련
  - 의료인·의료기관, NGO,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간담회 추진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5. 소수자 인권향상

### V-5-1. 성 소수자 차별개선 및 인권향상

- 유엔인권이사회는 제17차 회의(2011.6.)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 채택
  - 성 소수자는 잘못된 상식과 편견 및 선입견으로 인해 공격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성소수자(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기본 실태를 파악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 해소를 위한 계기 마련
- 성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특별-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 북한인권 관련한 긴급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 정책개발 활성화를 추진
  -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확립
-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 추진
    - 해외 탈북자의 신변문제,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탈북자의 국내 정착 문제 등 북한인권과 관련된 긴급현안 대응 및 정책 개발
    - 탈북청소년 교육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개토론회 개최 및 정책권고 추진
    - 국내 입국 탈북자의 정부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운영 개선
    - 북한인권침해사례 접수관련 업무협조 강화(국정원, 통일부 등)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폭넓은 자료수집을 위해 북한인권침해신고서 기능 개선
    - 북한인권기록관 공간 확장
    - 북한인권 관련 문서,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증거자료 수집
  - 북한인권 인식증진 자료 개발
    -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주요 사례 발굴 지속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주요한 침해내용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외국어로 번역하여 북한의 인권참상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및 북한인권포럼 운영
    - 「북한인권법」 제정 모니터링 등 각종 북한인권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및 '북한인권포럼' 운영(분기별 1회 정례 개최)
    - 「북한인권법」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하여 국회, 미디어, 민간단체 등 외

## 부협력 강화

-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상황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논의 주제 선정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식 및 차별실태 조사
  -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정책 마련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권브로슈어 제작 배포
  - 북한 및 탈북과정의 인권침해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 자발적 북한인권 침해신고 유도
  -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 인권 정보, 차별 피해에 대한 진정 및 구제절차 등 안내

## 특별-2.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조성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상호 공동관심 사항 협의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방안을 모색
  -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업무공조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여론 조성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
- 국제심포지엄 개최(2014년 상반기)
    - 주제(안)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공조 방안 등
    - 참가대상 : 북한인권 국·내외 전문가, 관련 언론, 국제NGO 단체 등
  - 북한인권 국제 동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방문
    - 국제인권 메카니즘 활용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참석 및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 촉구
      - 북한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2014) 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조약감시기구와의 공조 모색
    -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노력
      - 상대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은 남미, 아프리카, 중동, 일부 아시아 지역에 북한인권 안내자료 배포 및 관련논의 확산

- 북한인권 논의가 활발한 북미, 유럽, 태평양 지역의 언론 동향 파악
- 해외체류탈북자 등 현지조사
  - 탈북자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거나 주요 탈북경로에 있는 중국 등 해외 탈북자의 인권상황 파악
  -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주요 인권기구 방문
  - 우리 정부의 해외 탈북자 대응 시스템 점검

## **기획사업**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 **기획1-1.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조성**

-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실태조사 및 인권경영 확산·실천을 위한 법령,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인권경영을 확산
- 국내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도입, 실천, 확산 등을 위한 법령,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기획1-2.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국내 공감대 형성**

-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의 장 마련,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고취 및 자발적 인권경영 유도
- 인권경영포럼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고취 및 자발적 인권경영 유도
- 국내외 인권경영 우수기업 사례발표회 개최
  - 국내외 인권경영 우수실천기업 선정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촉구
  - 인권경영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연구개발 후, 국내 기업은 사례 응모를 통해, 해외 기업은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후보 기업선정

### **기획1-3. 주요기업과 MOU 체결을 통한 인권경영 활동지원**

- MOU 체결 기업에 기업과 인권 관련 각종 정보 및 교육 지원,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점 및 도전과제 등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권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인권경영의 실천, 확산을 지원
  - 기업의 특성(규모, 업종 등)에 따라 MOU 체결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협의, 작성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
- 인권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과 해결방안 강구
  -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등을 통한 사전예방 및 사후 구제활동 지원

#### **기획1-4. 국제협력활동 강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정책 및 전략 수립 등에 국제기준의 국내이행 강화</li> <li>○ ICC 기업과 인권 아·태 지역 워킹그룹(Working Group) 국가로서 국제협력 강화</li> </ul> |
|--|
- 유엔, OECD 등 국제기구 주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연례 포럼 참가
  - ICC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회의에 참가하여 위원회의 사업 및 성과를 발표하고 각국의 주요 사례 및 기업과 인권에 관한 후속조치 등 공유
  - 인권경영 관련 해외자료 번역·배포 및 발표회 개최

## 기획사업 2. 정보인권 증진

### 기획2-1. 정보인권 영문보고서 발행 및 정보인권포럼 운영

- 정보인권 보고서(2013.1.) 대국민 홍보를 통해 위원회 위상 강화
  - 정보인권 관련 국제사회 및 위원회 권고, 정보인권 보고서 정책제언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련기관이 정보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이슈 제기
  - 정보인권 포럼을 통하여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 
- 정보인권 보고서 요약 영문홍보자료 작성 및 발송
    - 제9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회의 참여시 정보인권 보고서 배포 및 홍보
  - 정보인권 포럼 운영
    - 필요시 정보통신기업의 프라이버시 또는 인권경영 관련 회의 등과 연계 추진

### 기획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기준마련 등

-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와 상업적 이용에 대한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
  - 정보통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통한 행태감시 및 타겟마케팅 관련 제도 개선 대안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3주년에 맞춰 쟁점 논의
-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본인확인 정보 보관의무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2010헌마47)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제도적 논란이 발생하는바, 본인확인 기관에 대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한 이슈제기와 전문가 의견 청취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안 대응

-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검색 및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기업의 타겟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3주년 기념 정보인권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 개최
- 「CCTV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관련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안 대응 및 안전 검토

### 기획2-3. 인권친화적 사이버 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미국의 해외국가 감청 관련 국제사회 논의, 사이버범죄, 해킹과 보안, 인터넷 불법복제와 지적재산권, SNS의 확산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와 검열 등 다양한 인터넷 관련 이슈에 대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인권친화적 사이버 문화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에 국제적 논의와 기준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

-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개편 관련 국제적 이슈 모니터링
- 미국의 해외국가 감청과 관련한 국제사회 논의 모니터링
- 인권친화적 사이버 문화형성을 위한 정보인권 관련 다양한 이슈 모니터링

### 기획2-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 정보취약계층(노년층 등) 정보접근권의 문제점 등 실태파악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검토

-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실태 파악(노인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 활용)
-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 논의

# 일반사업 | 국가인권위원회 역량 강화

## 1. 국내외 협력 강화

### 1-1. ICC, APF 교류협력 강화 (다자간 협력)

- UN, ICC, APF 등 다자간 회의체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인권의제를 파악하고 선도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가위상을 강화
-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ICC·APF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인권보호체계와 국내인권보호체계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ICC 리더십 역할 강화
  - ICC 집행이사회,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참가
- UN, ICC, APF 등 인권국제회의 참가
  - UN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석(인권이사회, 각 조약위원회 회의 등)
  - ICC 연례회의 및 실무그룹회의 등 참석, 위원회 모범사례 발표 등 적극적 역할 견지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사무총장급 회의 등 참석
- ICC 및 APF 활동지원
  - 아태지역 인권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APF 활동 지원(100백만원)

### 1-2. ICC 승인소위원회 정기심사 대비

- ICC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 준수여부에 따라 회원등급을 부여하여 왔으며, 이는 UN 인권메커니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권/발언권 부여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2004, 2008년 A등급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2014년 예정되어 있는 정기심사시에도 A등급을 받아,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써 국내·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임.



- ICC 승인소위원회 심사자료 제출
- ICC 승인심사위원회와 원격화상회의(승인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 1-3. 국제인권기구 협력 강화 (양자간 협력)

- 국제인권사회에서 모범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내외 인권증진 기여
-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리더십과 국가위상 강화

- 국제인권기구 교류 협력
  -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를 통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제도에 관한 정보와 경험 습득
  - 덴마크 인권기구 등 MOU 체결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기구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역량 강화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 위원회 설립이후 주요 활동 및 성과, 국제 인권현안, 참가인권기구간 경험 공유 및 위원회의 노하우 전파

### 1-4. 인권정책개발과정 운영 - 국제인권교육

- 인권정책수립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지원, 국제인권에 관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통해 위원회 위상 강화 및 성숙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격 제고

- 과정 명칭 : 인권정책발전(Human Rights Policy Development)
- 기간 : 2014. 4. 2. ~ 4. 26. (25일간)(미정)
- 장소 : 한국국제협력단연수원(입교식과 수료식은 위원회)
- 후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참가규모 : 7개국 20명
- 주요 내용

- 모듈 I : 인권일반론
- 모듈 II : 국가인권기구
- 모듈 III : 국제인권시스템
- 모듈 IV : 인권과 개발
-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기관 방문

### 1-5. ODA의 인권적 접근에 관한 연구

- ODA의 인권적 접근의 실현을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적 방안 모색
  -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발전권, HRBAD(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등 국제적 논의를 연구, 소개, 홍보함으로써 인권영역 확대
- ODA의 인권적 접근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한국의 ODA 관련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검토, ODA의 인권적 접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
  - ODA의 인권적 접근에 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 자료의 번역 및 발간
    - UN 총회, UN OHCHR, UNDP 및 선진국의 ODA의 인권적 접근에 관한 자료 번역, 제작·배포

### 1-6. 국제인권동향 모니터링

- UN, APF, ICC, 국가인권기구, 국제 주요 NGO 등의 활동 및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국제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 도모
- 주요 내용 : UNOHCHR, UN 인권이사회, APF 및 ICC, 국제 NGO, 주요국 국가인권기구의 활동 및 주요인사 동정 등
  - 주기 : 월 1회 배포
  - 배포방법 : 인트라넷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부내 메신저로 배포

## 1-7. 온라인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 위원회 정책권고, 진정사건 결정, 활동 등을 국·내외 정책고객 등에게 이메일 발송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역할에 대한 이해제고와 홍보
- 주요 내용 : 메인뉴스, 주요 정책권고 및 진정사건 결정, 인권위 소식·행사 등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 및 국내 주요 인권 동향 소개
- 발간 형식 : 영문 뉴스레터 원고를 웹 형태로 제작하여, 정책고객관리 시스템(PCRM)을 통해 정책고객 등에게 발송
- 주기 : 월 1회 배포
- 배포처 : OHCHR, APF, 해외 국가인권기구(77개국 78개 국가인권기구), 주한 외국대사관, 국제NGO 등 PCRM에 사전 등록된 약 2,250여 개소

## 1-8. 인권단체 보조금 지원

- 인권단체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인권단체 활동 활성화 기여와 인권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인권문화 저변을 확대
  - 사회적 소수자 등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활 속의 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인권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
- 기본계획 수립·확정
  - 지원사업 공모, 인권단체 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 2014년 협력사업 선정과 지원
    - '보조금사업심사위원회' 사업 심사와 선정
    -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추진
    - 사업 중간평가(서면평가) 및 현지모니터링
    - 사업결과보고서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인권단체공동협력사업 사후 활용 방안 검토(정책과제 발굴, 교육, 홍보 등에 활용)
  - 우수사업 사례 발표회 개최
    - 인권실천 우수사례 선정을 통한 사업 성과 확산 모색

## 1-9. 시민사회와 인권증진 공동협력

-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논의 활성화, 우리 위원회 인권정책 의제 개발 등에 참여 기회를 확대
- 인권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장 활동가 등의 의견 수렴, 생활 속의 인권 상황 점검과 인권정책 개선과제를 발굴

- 인권현장 방문 추진
  - 인권취약분야 인권상황 점검 및 현장의 목소리 경청, 생활밀착형 인권 개선 과제 발굴(월 1~2회)
- 인권시민단체와 일상적 교류협력 및 활동지원
  - 인권단체 활동 상시 모니터링과 위원회 사업과의 연계방안 검토 추진
  - 위원회 전략과제 관련 인권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수시)
  - 강원 및 도서지역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개최(연 3회)
  - 부산, 광주, 대구, 대전지역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연 4회)
- 대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및 홍보활동
  - 대학 학생자치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신입생 예비학교시 '자기권리(노동권, 군 인권, 성차별 등) 지키기'(가칭) 홍보·교육프로그램 진행

## 1-10. 이주인권 이슈 관련 협력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이주인권 관련 정부 정책, 국회 입법 상황 및 언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안 대처 및 정책 이슈 발굴
- 이주인권 공감대 형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및 관련 NGO와의 소통과 교류 확대

- 이주인권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 입법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 검토, 필요시 권고 및 의견표명
- 이주인권 현안 이슈에 대해 필요시 관계 부처와 업무협약의 추진
- 이주민 관련 NGO 및 당사자와의 간담회 등 추진

### 1-11. 장애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소통 및 현안 대응 강화

- 장애인 관련 제도·정책적 개선과제 및 진정사건 등 시의적절한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장애인 인권옹호 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필요
- 분기별 장애인 인권옹호 단체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장애계 이슈, 장애관련 사업 및 정책현안 등에 대해 논의

### 1-12. 인권단체 등과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 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도모
- 지역에서의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 제66주년 인권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내 인권문화 조성 및 지역민 인권의식 제고
- 언론사 기자와의 간담회(부산)
  - 인권사무소 개소일을 기점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 성과 홍보
-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 지역의 원로 및 인권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중점사업 등에 대한 의견 청취하고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부산)
  - 인권업무 전담 기관(부서) 및 단체를 포함한 정기적인 인권정책연석회의 운영(광주)
- 유관기관 및 인권시민단체와 연계한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행사 개최
  - 인권주간행사(토론회, 전시전, 영화제 등) 및 인권문화한마당 “인권아, 놀자!” 개최(부산)

## 2.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2-1. 인권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 인권상담 과정에서 축적되는 인권 현안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히 파악·정리하여 내부에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 주요 인권과제 흐름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
  - 상담유형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기록물을 발간, 인권정책 연구자료 제공과 대국민 홍보매체로 활용
- 상담과정에서 파악되는 인권이슈를 내부에 공유하는 '일일리포트' 작성·제공
  - 반기별 주요 상담·민원/안내 경향을 파악하여 전원위 보고
  - 주요 상담 사례들을 분석·유형화한 인권상담 사례집을 제작하여 상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2-2.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

- 국가인권기구의 조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 배양
  - 국제법, 인권규범 관련 결정 및 판례, 조사기법 등 전문역량을 체계적·상시적 교육
  - 내부 정기인권강좌 실시와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위탁교육 검토
- 인권 규범 및 법리에 관한 조사관 정기인권강좌 실시(연 4회 이상)
- 과별 조사관 『사건 케이스 Study』 운영
- 조사 현장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관학교』 운영

### 2-3.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처리 전문성 및 조사기법 등 역량강화

-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와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이해 등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 장애차별 진정사건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스터디
  - 감수성 증진 및 장애특성 이해를 위한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 등 방문

#### 2-4. 권리구제분야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직무교육(부산)

- 진정사건 유형, 사례, 조사기법 등을 발표 및 공유하여 합리적인 조사와 진정인의 권리구제의 실효성 도모
  - 자체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감수성과 업무이해도 제고
- 내부 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직무 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2-5. 권리구제분야 등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소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완(대구)

- 구성원 개인 및 상호간 업무 역량, 협력체계(파트너십) 강화
  - 업무매뉴얼 보완·제작을 통해 업무 이해 증진 및 체계적 업무추진 토대 마련
-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결정례, 법령, 사례 등 공유 토론의 장 마련
- 직원역량 함양 프로그램
- 1 직원 1개 분야 인권 강사 되기, 전문가 초청 교육, 문화컨텐츠를 이용한 직원 교육 등 운영
- 업무매뉴얼 정착 직원교육 실시, 개선사항 보완